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차 례

조 례

고양시 조례 제2781호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고양시 조례 제2782호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4
고양시 조례 제2783호	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
고양시 조례 제2784호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고양시 조례 제2785호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고양시 조례 제2786호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고양시 조례 제2787호	고양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29
고양시 조례 제2788호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고양시 조례 제2789호	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24-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291호선 외4개 노선, 어린이 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37
--------------------	---	----

공 고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차량등록과 공고 제2024-3호	2023년 12월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46
고양시 공고 제2024-44호	제12기 고양시 기술자문위원 추가 공개모집 공고	48

차 례

고양시 공고 제2024-51호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 주민 총수 및 연서 주민 수 공표	55
고양시 공고 제2024-64호	고양시 지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56

제28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4년 1월 9일

고양시 조례 제2781호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5명”을 “7명”으로, “1명”을 “2명”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 중 최다선 의원으로 하되,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고부미 · 최규진 의원(찬성의원: 김미경 의원 등 11명)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및 의원인 위원
정수를 확대
- 결산검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추천 규정 개정

□ 주요내용

- 가. 결산검사 위원 정수를 7명으로, 위원 중 의원의 수를 2명으로 확대
(제2조).
- 나. 위원의 자격을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
람으로 확대(제3조).
- 다. 위원 중 대표위원 선임 규정 개정(제6조).

제28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4년 1월 9일

고양시 조례 제2782호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고용,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양시에 있는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노동조건의 개선
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권익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고양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지원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관내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

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고양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양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동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고양시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고양시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고양시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 노동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고양시 노

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예방대책 수립
2.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
3.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안자:** 정민경 · 손동숙 · 김미수 의원(찬성의원: 임홍열 의원 등 16명)

□ 제안이유

-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생명 · 안전 ·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본 조례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의 대상 규정(제4조).
- 나.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함(제8조).
- 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제9조).

제28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4년 1월 9일

고양시 조례 제2783호

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 문화 특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연합회)을 말한다.
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음식문화 특화거리”란 일정 지역 내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서,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적용의 예외)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특화거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음식문화 특화거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기본방향
2. 음식문화 특화거리 추진 계획·목표 및 조성전략
3. 자원 조달 방안
4. 조성된 특화거리의 사업성과 및 관리실태
5. 그 밖에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① 시장은 관내 일정 지역을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고양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별표 1의 선정 심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8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신청)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 받으려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예정거리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2.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3. 음식점 위치 등이 표시된 음식문화 특화거리 예정 위치도

4.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제9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요건) ①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일정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고 있을 것
2.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 등의 자치 기구가 음식점 30개소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과징금을 포함) 업소는 30개소에 포함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문화 특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위한 환경개선사업
2.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3. 축제 및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
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
5. 상인 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의 관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운용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해당 상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 사업비의 적정 사용 여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점검 및 지도하게 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해당 상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 ③ 시장은 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 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고양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문화 특화거리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실태 점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시장이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취소를 요청할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3조(심의)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취소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고양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취소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

[별표 1]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심의 기준(제7조 관련)

1. 항목별 기준

항 목	심 의 기 준	배점
합계		100
음식점 30개소 이상 집단화	· 예정거리에 소재한 음식점은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 6점 - 40개소 이상 : 8점 - 50개소 이상 : 10점	10
자치기구 구성 운영	·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 등 자치 기구가 있어야 한다. - 운영기간 1년 미만 : 6점 - 운영기간 1년 이상 : 8점 - 운영기간 2년 이상 : 10점	10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	·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는 3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 6점 - 40개소 이상 : 8점 - 50개소 이상 : 10점	10
음식문화 특화거리 신청 동의여부	· 예정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 이상 동의 : 6점 - 상인의 80% 이상 동의 : 8점 - 상인의 90% 이상 동의 : 10점	10
사업비 자부담 동의여부	· 사업비 자부담에 대한 예정지구 거리 상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 이상 동의 : 6점 - 상인의 80% 이상 동의 : 8점 - 상인의 90% 이상 동의 : 10점	10
거리의 환경	· 거리는 쾌적하고 특색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10
거리의 역사성	· 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성 또는 특화된 음식이 있어야 한다.	10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	·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은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0
	가.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10
	나.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고양시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개발 및 거리 내 전파 등 포함)	10
	다.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 방안	10

※ 비고 :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심의 기준

가. 항목별 득점비율은 60% 이상 이어야 한다.

나. 각 심사자별 총점과 전체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신청서

신청인 (상인조직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단체명	(고유번호 : 등록일 :)		

신청사항	음식문화 특화거리 명칭	
	위 치(소재지)	
	예정 특화거리 음식점 수	
	예정 특화거리 상인 수	
	신청 동의한 상인 수	

「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아
그

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제출서류

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

[별지 제2호서식]

상 인 회 동 의 서

※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미용업 등 영업신고 업종으로 작성하고, 그 외 자유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의(서명)는 해당업소 대표자가 반드시 서명해야 함.

연 번	업종	대표자	업소명	소 재 지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신청 동의(서명)	사업비 자부담 동의(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음식문화 특화거리 명칭	
신청배경	
목 적	
거리의 역 사 또는 특화된 음 식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고양시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개발 및 거리 내 전파 등 포함)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 방안	
기타 활성화 방안 등	

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안자:** 손동숙 · 정민경 · 김미수 의원(찬성의원: 신현철 의원 등 8명)

□ 제안이유

- 고양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
- 민간주도형 특화거리 지정을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외식업소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상인”, “상인조직”, “음식점”, “음식문화 특화거리” 등 신규 용어를 정의함(제2조).
- 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상인조직의 책무” 등 명시함(제3조부터 제4조까지).
- 다. 특화거리의 형평성 및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의 예외” 기준을 명시함(제5조).
- 라.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세부적인 “종합계획의 수립” 기준을 명시함(제6조).
- 마.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기준”을 명시하고 “지정신청”, “지정요건”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바. “지원사업” 기준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
- 사. 지원사업의 명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지원사업의 관리” 기준을 명시함(제11조).
- 아.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함(제12조).
- 자. 별도의 음식문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장하여 대행하고자 함(제13조).

제28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4년 1월 9일

고양시 조례 제2784호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학교”를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입학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 대안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중·고등학교(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중·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을 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2.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재정여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김미경 · 엄성은 · 공소자 의원(찬성의원: 김해련 의원 등 12명)

□ 제안이유

- 현행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는 교복 지원대상을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신입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따라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기관에 입학한 학생이 교복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었음.
- 이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한 교복 지원 근거를 마련(제4조)하는 한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도록(제5조제2항)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여 교복 지원 행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제2조).
- 나. 교복지원의 대상에 관한 사항(제4조).
- 다. 교복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제5조).

제28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4년 1월 9일

고양시 조례 제2785호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란 장애인선수로 구성된 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시장은 장애인 전문체육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인 선수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5조의2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박현우 · 장예선 · 공소자 의원(찬성의원: 권선영 의원 등 7명)

□ 제안이유

- 현재 고양시에는 직장운동경기부를 통해 고양시의 스포츠를 발전시키고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는 운영하고 있지 않아 고양시 장애인 선수들의 인재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정의하고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차후 고양시 장애인스포츠의 발전과 인재육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함(제2조제8호).
- 나.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5조의2).
- 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제9조제2항).

제28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양시장이 동 환 인

2024년 1월 9일

고양시 조례 제2786호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공립 작은도서관 명칭 및 위치) 고양시 공립 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고양시 공립 작은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8조의2 관련)

명 칭	위 치
햇빛마을작은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152번길 39(관리사무소 2층)
고양작은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19-11(고양종합복지회관)
관산작은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89(관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화전작은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1-1(화전동종합복지회관 2층)
고양윤창작은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동현로 398-17(관리동 2층)
햇빛21작은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68 (관리사무소 2층)
삼송작은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80(삼송동종합복지회관)
대덕작은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덕은로 34(대덕동종합복지회관 1층)
마상공원작은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69번길 46(마상근린공원)
내유작은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 96(복합커뮤니티센터 1층)
사리현작은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 68(관리동 2층)
호수공원작은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호수공원)
강촌공원작은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132-1(강촌근린공원)
모당공원작은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73-2
탄현작은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140(관리사무소 지하 1층)
대화마을작은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1로 61(관리사무소 1층)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최규진·신인선 의원(찬성의원: 공소자 의원 등 9명)

□ **제안이유**

- 고양시 공립 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립 작은도서관 명칭 및 위치 조항 추가(제8조의2).

제28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 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4년 1월 9일

고양시 조례 제2787호

고양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길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친화 환경 조성
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걷기길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3. “맨발걷기길”이란 도시공원 내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길로서
시멘트, 아스팔트, 나무데크 등으로 포장되지 않고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길 조
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 전략
2. 맨발걷기길 이용자의 안전대책 및 정비 방안
3. 맨발걷기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맨발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안

② 시장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걷기길이 일정 구간 확보 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
2. 맨발걷기길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보수
3. 세족대, 신발장, 쉼터 등 편의시설의 설치·보수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5. 맨발걷기 행사 개최 등 문화·예술 사업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맨발걷기길 조성 시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안자:** 김수진 · 정민경 · 손동숙 의원(찬성의원: 공소자 의원 등 11명)

□ 제안이유

- 고양시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맨발걷기를 활성화해 건강친화 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 라. 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제28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양시장이 동환인

2024년 1월 9일

고양시 조례 제2788호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양시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를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고양시의회”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을 선출해야 한다.

제5조의 제목 “(변경 등 신고)”를 “(대표의원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 구성 연월일,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소속 의원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간의 협의를 통해 교섭단체 소속의

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표의원의 추천은 해당 교섭단체 소속 전체 의원의 추천으로 본다.

⑤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간의 협의를 통해 상임위원회의 위원 (이하 “상임위원” 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 ①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2.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 교섭단체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관용차량
4.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교섭단체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고양시의회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최규진 · 박현우 의원(찬성의원 :권용재 의원 등 9명)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체가 법제화됨에 따라 교섭단체에 대한 권한이나 예산 지원 등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제5조).
- 나. 교섭단체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다. 교섭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함(제7조).

제28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4년 1월 9일

고양시 조례 제2789호

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공소자 · 박현우 · 송규근 의원(찬성의원: 김미수 의원 등 8명)

□ 제안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간을 새로이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간 조항을 신설함(제12조).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291호선 외4개 노선, 어린이 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51-6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291호선 외4개 노선, 어린이 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9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51-6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 명칭: 소로2-291호선 외4개 노선, 어린이 공원 조성 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계획시설(도로)

구분	규 모				연장 (m)	면적 (㎡)	기능	사용 형태	기점	종점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결정	소로	2	291	8~19	24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토당동 251-63	토당동 289-59		
금회 시행	소로	2	291	8~19		2070.4	국지 도로	일반 도로	토당동 251-63	토당동 289-59		
결정	중로	1	37	20~33	177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토당동 282-8	토당동 413-19	경고제274호 10-09-06	
금회 시행	중로	1	37	20~33		380.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토당동 282-8	토당동 413-19		
결정	소로	1	31	15~19	56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토당동 889-1	토당동 282-8		
금회 시행	소로	1	31	15~19		1037.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토당동 889-1	토당동 282-8		
결정	소로	3	45	6	4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토당동 254-1	토당동 252-9	경고제133호 81-05-13	
금회 시행	소로	3	45	6		4.9	집산 도로	일반 도로	토당동 254-1	토당동 252-9		
결정	소로	3	166	6	4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토당동 252-9	토당동 251-43		
금회 시행	소로	3	166	6		258.3	국지 도로	일반 도로	토당동 252-9	토당동 251-43		

- 도시계획시설(공원)

구 분	시설의 종류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결정	공원	어린이 공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 당동 251-30번지 일원	1,541	경기제2청고시2006-5068호	
금회 시행	공원	어린이 공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 당동 251-30번지 일원	1,541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69-4 유익빌딩 3층
- 성명 : 능곡연합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세창)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다, 바”항과 같음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당초)

가. 중로2-291호선

일 련 번 호	권리소재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동 리	지 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토당동	251-063	대	394	97.5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2	토당동	251-116	임	144	144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3	토당동	251-114	도	12	12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4	토당동	251-115	대	371	371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신탁	
5	토당동	73-48	도	61	61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6	토당동	73-52	대	62	62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7	토당동	73-25	도	56	56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8	토당동	73-50	대	4	4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신탁	
9	토당동	73-44	대	155	155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10	토당동	80-6	도	5.6	5.6	고양시					
11	토당동	73-1	대	356	95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12	토당동	73-47	임	53	53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13	토당동	80-5	도	116.7	116.7	고양시					
14	토당동	73-46	도	86	86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15	토당동	251-105	도	20	20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16	토당동	251-103	대	164	164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17	토당동	251-108	대	279	279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18	토당동	251-101	대	459	232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사용할 토지의 면적 합계				2,798 .3	2013. 8						

나. 중로 1-37호선

일 련 번 호	권리소재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동 리	지 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9	토당동	251-063	대	394	53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20	토당동	251-109	대	23	23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21	토당동	251-071	대	14	14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22	토당동	251-119	대	38	38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23	토당동	251-120	대	12	12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24	토당동	251-106	대	109	109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25	토당동	251-100	대	58	58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사용할 토지의 면적 합계				648	307						

다. 소로 3-166호선

일 련 번 호	권리소재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동 리	지 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26	토당동	251-112	도	19	19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27	토당동	251-111	답	229	239.3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사용할 토지의 면적 합계				248	258.3						

라. 소로 3-45호선

일 련 번 호	권리소재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동 리	지 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28	토당동	288-11	도	3	3	고양시					
29	토당동	287-12	도	1	1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30	토당동	287-11	대	1	1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사용할 토지의 면적 합계				5	5						

마. 소로 1-31호선

일 련 번 호	권리소재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동 리	지 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31	토당동	287-10	대	339	339	능곡연합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32	토당동	287-13	도	5	5	능곡연합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33	토당동	288-10	도	20	20	고양시					
34	토당동	289-69	도	28	28	고양시	876.1				
						능곡연합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9.9				
35	토당동	289-24	도	62	62	능곡연합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36	토당동	288-8	대	135	135	능곡연합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37	토당동	289-70	대	65	65	능곡연합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신탁	
38	토당동	289-73	전	60	60	능곡연합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39	토당동	289-71	도	32	32	능곡연합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40	토당동	289-72	도	10	10	고양시					
41	토당동	251-110	대	6	6	능곡연합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신탁	
42	토당동	251-113	도	13	13	고양시					
43	토당동	252-121	도	35	35	고양시					
44	토당동	252-101	대	459	227	능곡연합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사용할 토지의 면적 합계				1,26 9	1,03 7						

바. 어린이 공원

일 련 번 호	권리소재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동 리	지 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토당동	251-63	대	394	138	능곡연합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2	토당동	251-107	대	354	354	능곡연합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3	토당동	251-102	대	307	307	능곡연합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4	토당동	251-104	도	47	47	능곡연합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5	토당동	73-45	도	121	121	능곡연합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6	토당동	73-55	대	18	18	능곡연합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7	토당동	80-4	도	0.2	0.2	고양시					
8	토당동	73-7	임	60	60	능곡연합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9	토당동	73-1	대	356	202	능곡연합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10	토당동	73-34	대	247	92	능곡연합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11	토당동	73-43	대	1	1	능곡연합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12	토당동	73-53	도	1	1	능곡연합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13	토당동	73-4	대	48	48	능곡연합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14	토당동	73-44	대	155	121. 8	능곡연합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15	토당동	73-50	대	4	4	능곡연합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16	토당동	73-52	대	62	8	능곡연합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17	토당동	73-25	도	56	18	능곡연합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 16, 3층				
사용할 토지의 면적 합계				2,23 1.2	1,54 1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변경)

※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및 토지조서변경사항 적용에 따른 변경적용

① 중로 1-37호선

일련 번호	권리소재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동리	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토당동	932	도	172.1	172.1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16, 3층				
2	토당동	933	도	208.4	208.4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16, 3층				

② 소로 3-166호선

일련 번호	권리소재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동리	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3	토당동	937	도	258.3	258.3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16, 3층				

③ 소로 3-45호선

일련 번호	권리소재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동리	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4	토당동	936	도	4.9	4.9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16, 3층				

④ 소로 1-31호선

일련 번호	권리소재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동리	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5	토당동	935	도	1037.8	1037.8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16, 3층				

⑤ 소로 2-291호선

일련 번호	권리소재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동리	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6	토당동	934	도	2070.4	2070.4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16, 3층				

⑥ 어린이공원

일련 번호	권리소재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동 리	지 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7	토당동	931	공원	1541	1541	능곡연합주택재건 추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토당로16, 3층				

지장물 세목조서

－ 해당사항 없음.

2023년 12월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2023년 12월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 9. ~ 2024. 1. 30.(22일간)
3. 공고대상 : 21모532* 등 8대(소유자, 이해관계인)
4.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과 특별사법경찰2팀 (☎031-8075-476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202311) 1부.

2024. 1. 9.

고양시장

운행정지상태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소유자명	사용본거주소	용도	불법 운행된 사유	불법 운행된 상세사유	등록관청명	등록일
등록	21모532*	KPBBH3MK1CP071341	코란도C	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	개인용	도난·분실자동차	2019년 말경 음주사고가 나서 차량이 견인된 이후 차량의 행방을 모름	경기도 고양시	2023.12.26
등록	56두668*	WBAXX1106F0L98450	BMW X4 xDrive20d	홍**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개인용	기타	차량을 홍**의 명의로 구입을 하고 김**이 사용 함 김**에게 차량명의이전을 요청하였으나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미루다 현재는 연락도 되지 않음	경기도 고양시	2023.12.26
등록	28더855*	WWZZZ16ZEM024051	Jetta 1.6 TDI Blue Motion	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개인용	기타	본인 명의의 차량을 남편이 사용하고 있고 남편은 8년째 소재 불명임 남편이 지속적으로 교통위반을 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어 차량 명의이전이나 차량반납을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계속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경기도 고양시	2023.12.26
등록	280고149*	KMHR281ABNU472943	팔리세이드 (PALISADE)	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	개인용	기타	렌트카 대표 조**가 이** 명의로 차를 뽑고 대출까지 받아 형사 사기로 고소 중 차량의 행방도 모르고 누가 운전하는 지도 몰라 운행정지를 신청하고자 함	경기도 고양시	2023.12.11
등록	817부984*	KMFZBY7KCFU075750	포터 II (PORTER II)	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개인용	기타	자동차를 사서 아는 동생에게 주었고 한달에 얼마씩 받기로 했는데 2달 이후론 돈도 안들어오고 연락도 안되고 세금과 고지서가 날라와서 피해를 봅니다.	경기도 고양시	2023.12.07
등록	189무648*	KNMA4C2CMKP031342	SM6	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개인용	기타	친구인 김**에게 차량을 빌려준후 김**가 차량을 임의로 처분함 명의이전도 하지않고 차량의 행방도 모름	경기도 고양시	2023.12.05
등록	34마522*	KMHXF31VPVU177654	다이너스티	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개인용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안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김**이라는 인물에게 차량을 판매하였지만 자신이 대구에 내려가서 이전을 한다고 한 이후 이전을 하지 않고 이후 연락되지 않음	경기도 고양시	2023.12.04
등록	25조634*	KMHF341NBKA233387	그랜저(GRANDEUR)	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개인용	기타	황**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차량을 반납하지 않음	경기도 고양시	2023.12.01

제12기 고양시 기술자문위원 추가 공개모집 안내

■ 고양시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9조 및 「고양시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 현재 고양시 기술자문위원의 임기가 2024. 2. 17. 만료됨에 따라 2년(2024. 2. 18. ~ 2026. 2. 17.)동안 고양시의 건설기술 발전에 참여하실 기술자문위원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4. 1. 10. ~ 2024. 1. 19.(10일간)

2. 모집인원 : 총 14명

3. 신청자격 : 자격기준 참조 (별첨)

4. 모집분야

	모집(전문)분야
제12기 고양시 기술자문위원 (총 4개 분야)	①토목구조 7명, ②건축구조 2명, ③안전 2명, ④도시 3명

5. 신청기한 : 2024. 1. 19.(금) 18:00까지

6. 신청방법 : E-mail로만 신청가능 (방문, 우편 및 팩스 등 접수 불가)

■ 수신 E-mail : dfg8762@korea.kr

■ 서식

○ 메일 제목에 “제12기 기술자문위원회 후보자 신청(성명_모집분야)” 표기

○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 고시/공고

→ 『기술자문위원 후보자 등록안내』에서 다운 받아 작성

7. 기타 : 자세한 신청방법은 붙임의 『고양시 기술자문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 안내문』 확인

8. 제출서류

가. 등록신청서 1부(별첨1 서식에 작성)

☞ 본인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한 스캔파일과 한글파일 동시 제출

나. 각종 증빙서류(재직증명서, 학위증 사본, 자격증 사본 등) 각 1부.

9. 제출서류를 하나의 폴더에 저장한 후 “이름_모집분야.zip” 형식의 압축 파일로 제출(폴더명 예시: 김고양_토목구조)

☞ 서식 : 별첨1 참조

☞ 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서명(또는 도장 날인) 후 스캔(pdf)하여, 한글파일(hwp)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10. 제출서류 목록

연번	서류명	자료형태	비고(발급기관)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한글파일	
2		스캔파일	출력 후 '서명' 란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
3	재직증명서	스캔파일	※ 3개월 내 발급한 증명서(직장이 없는 경우 미제출)
4	학위증명서	스캔파일	
5	경력증명서	스캔파일	※ 3개월 내 발급한 증명서
6	자격증 사본	스캔파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보유자만 해당)
7	위촉장 사본	스캔파일	공공기관 공문 또는 위촉장(보유자만 해당)
8	특허증, 신기술지정증서	스캔파일	특허청, 국토교통부 등(보유자만 해당)

☞ 관련 법류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 및 관련 증명서

☞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증명서에 한하며, 관련 법규의 위임 규정이 없는 민관 기관에서 발급한 인정서는 인정 불가합니다.

☞ 기관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11. 심사 및 통지 :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 대상자만 개별 통지

12. 기타사항

가. 신청서 작성서 미흡(내용 불분명)과 증빙서류 미제출 시 사전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나. 보내주신 신청서는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위촉 및 고양시 실·과·소에서 긴급점검 또는 타 법령에 의거 1회성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9일

고양시장

【별첨 1】

고양시 기술자문위원 자격요건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자 격 요 건
가	•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 및 사업소의 5급 이상 공무원
나	• 해당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자
다	•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라	•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마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의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바	•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위 항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별첨 2】

고양시 기술자문위원 등록분야

구분	전문분야	세부 전공분야	비고
토목 분야	토목구조	강구조, 콘크리트 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건축 분야	건축구조	강구조, 콘크리트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기타 분야	안전	건설안전, 기계안전, 공정안전	
	도시	도시설계, 도시계획	

[별첨 3]

제12기 고양시 기술자문위원 후보자 신청서

☐ 후보자 인적사항 요약정보

성명	소속	전문분야	연락처(휴대폰)	연락처(자택)	연락처(사무실)

☐ 후보자 인적사항 상세정보

1. 성명	(한자)		주민번호		
2. 자택주소	(우편번호)				
3. E mail					
4. 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폰:	팩스:	
5. 직장현황	주소 : (우편번호)				
	직장명:		부서명:		
	직위:		직급: 담당업무:		
6. 직업군	공무원(), 공기업,준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민간기업(), 기타()				
7. 소속NGO	NGO명: (직책 및 업무:)				
8.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격증명(종목코드)		인가·관리기관	
9. 학력현황	학위취득년월	출신학교		학위구분	전공분야
10. 전문분야	세부전공 ① ②				
11. 경력현황	근무기간(시작~종료)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경력
12. 주요저서 및 논문	제출년월	출판사·관련학회	논문명		논문 주요내용
13. 자문활동	활동기간(시작~종료)		자문활동명		활동내용
14. 고양시 위원회	제1기 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		제11기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상기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작성 자 : (인)

고양시 기술자문위원장 귀하

【별첨 4】

후보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 후보자 등록신청은 반드시 위 서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성명 ~ 5. 직장현황은 서식에 의거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고 접수된 후보자의 메일주소와 등록신청서 상 후보자의 메일주소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직급 : - 공무원은 시설 4~5급(토목, 건축 등 명시)
- 투자기관·협회는 (임원, 1급, 2급),
- 연구기관은 투자기관·협회의 2급 이상에 해당되는 연구원만 작성
6. 직업군은 해당항목에 (○)으로 표시합니다.
7. NGO에 가입한 분은 NGO명과 직책 및 담당업무를 기재합니다.
8. 자격증은 국가공인기관이 발급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하여 종목 및 등급을 기재합니다.
9. 학력현황은 대학 이상의 학력만 기재하시고 학위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로 졸업구분은 졸업, 수료, 재학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고졸 이하의 졸업자께서 기술자문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출신학교를 기재합니다.
10. 전문분야는 본인의 전공학과와 세부전공과목, 자격증 보유, 현직의 담당업무 등을 종합하여 후보자 본인의 전문분야 및 세부전공은 【별첨2】의 “고양시 기술자문위원 등록분야”에 해당되는 사항에 알맞게 기재합니다.

< 예 시 >

10. 전문분야	토목구조	세부전공	① 콘크리트구조	② 강구조
----------	------	------	----------	-------

☞ 세부전공분야는 2개를 초과해도 되며, 분류표에 없으나 유사한 것은 기재 가능함

11. 경력현황은 상기 “10항”의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경력 위주로 기재하되, 최근 3년간 경력은 전문분야와 관련 없이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12. 주요저서 및 논문현황은 최근 10년간 발표한 본인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주요 저서 및 논문, 특허 또는 신기술·신공법 등의 제목과 주요내용을 기재합니다.
13. 자문활동현황은 본인의 전문분야 관련한 본인이 활동한 자문위원 활동사항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14. 고양시 위원회는 대상자인 경우 (○)으로 표시합니다.
15. 상기 각 항에 대한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도 추가용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6. 후보자 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한 후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1. 기술자문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는 2024. 1. 19.(금) 18:00까지 E-mail로 송부
(신청서 서식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dfg8762@korea.kr
 - 메일 제목에 “제12기 기술자문위원회 후보자 신청(성명_모집분야)” 표기
예) 제12기 기술자문위원회 후보자 신청(김고양_토목구조)
2. 보내주신 신청서는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위촉 및 고양시 실·과·소에서
긴급점검 또는 타 법령에 의거 1회성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 도로정책과(☎031-8075-28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 주민 총수 및 연서 주민 수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18세 이상 주민 총수
및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 12. 31. 기준]

자치단체명	18세 이상 주민 총수	연서 대상 주민 수	산출 기준	비 고
고양시	926,804	6,179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50	「공직선거법」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외

2024년 1월 9일

고 양 시 장

고양시 지명위원회 공개모집 공고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양시 지명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 1. 9.

고 양 시 장 (인)

1. 모집인원 : 5명
2. 공고기간 : 2024. 1. 9. ~ 1. 23. (14일간)
3. 접수기간 : 2024. 1. 19. ~ 1. 23. (3일간)
4.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5. 응모자격
 - 지명 분야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고양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문화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6. 위원회 주요기능(심사 및 자문)
 - 고양시 지명의 지정과 해제
 - 고양시 지명의 심의, 결정
 - 고양시 지명에 대한 고증·발굴·조사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지명 중 오류 및 중복지정에 정정
 - 기타 고양시 지명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심의위원회 개최 연 1~2회 예정
7. 제출서류
 - 공개모집 지원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자격(학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재직·경력증명서·논문 사본 등) 1부
 - 추천서 1부(기관, 단체 등 추천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8.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고양시청 토지정보과(도로명주소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 현대빌딩 3층
- 이메일 : tjdbwls97@korea.kr
 - ※ 근무시간(09:00 ~ 18:00) 내 접수.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 우편 및 메일 접수는 2024. 1. 23.(화) 18:00 도착분에 한함
 - ※ 신청서류는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에서 “고시/공고”란에 게재

9. 위원 선정방법 및 기준

- 고양시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시장이 선정 위촉
- 지명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계층·분야·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심사표에 따라 합산점수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
- 선정결과는 선정자에 한하여 추후 개별통지
 -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

10.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고양시의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활동중인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 031-8075-3099)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결격사유 안내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될 경우 위촉이 제한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고양시 지명위원회(위원)

공개모집 지원신청서

성 명	(한글)		성별	남	전공분야		사진 소명함판 (3cmX4cm)
	(한자)			여	생년월일		
현주소				연 락 처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E-mail		
최종학력	학교 학과 전공						
현근무지							
주요경력	○ ○ ○ ○						
자격사항	○ ○ ○ ○						
첨부서류 : 1. 자기소개서 1부 2.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1부							
위와 같이 작성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 . 지원자 성명 (인) 고양시장 귀하							

자 기 소 개 서

1.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2.자 택	주소 : (우편번호 :)					
3.연락처	자택 :		근무처 :		휴대폰 :	
4.근무처	근무처명		부서명		직 위	
	주 소	(우편번호 :)				
5.소속군	학교(), 협회(), 단체(), 연구소(), 기타()					
6.자격증	취 득 일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	.	.			
	.	.	.			
	.	.	.			
	.	.	.			
7. 학력	학위취득일	학 교 명		학위 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	.	.			
	.	.	.			
	.	.	.			
	.	.	.			
8. 전공분야			세부전공 ① ②			

9.경력 현황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 업무경력
10.고양시 각종위원회 참여현황	위원회명		임 기	비 고
11. 기타 사항				

추천서

1. 성명	
2. 생년월일	
3. 소속	
4. 직위	
5. 전공분야	
6. 주요경력	
7. 기타	

상기인을 고양시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24. . .

○○단체장 (인)

고양시장 귀하

※ 관련 기관, 단체 추천의 경우에 작성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정위원회 위원 심사자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심의위원회」 구성기간 동안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위원의 결격사유 신원조회 등을 위해 이용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인적사항/연락처/주소/기타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기재 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심의위원회」 신청서 접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표기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신원조회관련 관공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신원조회 확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신원조회 불가로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심의위원회」 위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표기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